



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2022.08.12.

□ 스페인산 식용란 수입금지 조치 알림

스페인 가금(칠면조) 농장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 농식품부에서 스페인산 식용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금지 대상

2022.8.11. 이후 선적되는 스페인산 식용란

나. 수입금지 제외 대상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2022.08.26.

□ 미국 캘리포니아산 가금육, 식용란 수입금지 조치 알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산 가금육 및 식용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금지 대상

2022.8.25.(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캘리포니아산 가금육, 식용란

나. 수입금지 제외 대상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2022.08.31.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법률 제13201호, '15.2.3.) 부칙 제3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 품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2.8.31.)하였음

나.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내용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국가 또는 지역 중 일본과 폴란드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 :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폴란드 :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개정고시일 : 2022.08.31.부터 시행됩니다.

2022.08.31.

□ 수입 닭고기(부산물 포함)

- 가. 국 가 : 모든국가
- 나. 검사대상 : 수입닭고기(부산물 포함)
- 다. 검사항목 : 나이카바진(동물용의약품) (해외작업장별 1회)

□ 일본산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방법 변경안내

- 일본 정부에서 보내온 자국산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방법 변경사항
주요내용 : (기존) 수기서명 → (변경) 원본: 수기서명, 부분: 시스템 발행으로 원본의
서명이 부분에 복사, 원본 및 부분증명서는 위조방지에 작성됨

□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개정

-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 서식이 개정(즉시 적용)
변경내용: 위생증명서 내용 중 제10항(BSE 관련사항) 추가

□ 칠레산 축·수산물, 태국산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 칠레산 축(식육), 태국산 축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칠레산 식육(소·돼지·닭고기 등) 수산물, 태국산 축산물
나. 시행일: '22. 8. 1.부터(수입신고일 기준)
※ 태국산 축산물은 태국 정부에서 우리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적용 가능
다. 방 법: 수입신고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수입신고 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한 경우, 종이 증명서(원본) 제출로 인정
※ 수입신고 접수 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및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오류신고 게시판에 신고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2022.08.01.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딸기)

- 가. 검사대상 : 딸기
- 나. 검사항목 :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2022.08.02.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

- 가. 검사대상 :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생식용)/기타수산물가공품
- 나. 검사항목 : 장염비브리오
- 다. 해외제조업소: VIET FOODS CO., LTD.(수산물:DL345)
- 라. 검사횟수 : 해당 제조사 7회(수산물)/ 2회(가공식품)

2022.08.02.

□ 미국 Lyons Magnus LLC사 음료류 관련

- 가. 회수제품 정보 : LYONS MAGNUS사의 회수대상 제품은 별도확인
- 나. 검사대상 : ㉠ LYONS MAGNUS ㉡ LYONS MAGNUS INC (미국)
검사품목 : 음료류(세균수, 대장균군(* 음료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단서조항을
확인하여 검사 실시)) 제품명별 1회 검사진행
- 다. 조치사항 : 회수대상 제품과 동일한 제품(유통기한 등)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 반려
조치하고 회수대상 외 제품은 상기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실시

□ 독일산 누크 젓병 관련

- 가. 검사대상 : MAPA GMBH (독일)
- 나. 검사품목 : 유리제
- 다. 검사항목 : 납, 카드뮴
- 라. 검사방법 : 2회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독일산 효모음료)

- 가. 검사대상 : BRAUEREI GEBR. MAISEL GMBH&CO. KG (독일)
- 나. 검사품목 : 효모음료
- 다. 검사항목 : 세균수(살균제품), 대장균군
- 라. 검사방법 : 제품명별 1회

2022.08.03.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페루산 바나나)

- 가. 검사대상 : AGROEXPORTACIONES NOR PERU S.A.C. (페루)
- 나. 검사품목 : 바나나
- 다. 검사항목 : 최초 정밀검사 항목
- 라. 검사방법 : 5회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페루산 바나나)

- 가. 검사대상 : ANA BANANA S.A.C. (페루)
- 나. 검사품목 : 바나나
- 다. 검사항목 : 최초 정밀검사 항목 및 스피노사드(Spinosad)
- 라. 검사방법 : 5회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페루산 바나나)

- 가. 검사대상 : AGRO PACHA (페루)
- 나. 검사품목 : 바나나
- 다. 검사항목 : 최초 정밀검사 항목 및 스피노사드(Spinosad)
- 라. 검사방법 : 5회

2022.08.08.

□ 전국 딸기 부피리메이트 검사 알림

냉동 딸기에서 '부피리메이트'가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됨에 따른 검사

가. 검사대상 : 딸기 (전국가)

나. 검사항목 :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다. 검사방법 : 최초 정밀검사시 시험항목 추가

2022.08.10.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검사)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지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검사항목

농산물 : 고사리, 고비 - 검사항목 : 납, 카드뮴

 깐도라지, 깐밤 - 검사항목 : 이산화황

 목이버섯, 당근, 대추 - 검사항목 : 농약(510종)

축산물 : 소고기 - 검사항목 : 이산화황동물용의약품 3군 (성장보조제 4종)

수산물 : 명태(냉동), 참조기(냉동), 문어(냉동)*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 -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수은

 새우류(냉동, 살) *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 - 검사항목 : 니트로푸란계

 부세 - 검사항목 :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에톡시퀸

가공식품 : 삶은 고사리 및 고비(과·채가공품) -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어육살 - 검사항목 : 보존료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유채유, 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면실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 검사항목 :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땅콩기름에 한함)

건강기능식품 : 영양성분 제품 - 검사항목 : 영양성분 함량 *영양성분 5개 이하 검사

 EPA 및 DHA 함유 유지 - 검사항목 :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검사항목 : 총(-)-Hydroxycitric acid, 납

 은행잎 추출물 - 검사항목 : 키클릭산, 플라보놀배당체, 비소

 프로바이오틱스 - 검사항목 : 프로바이오틱스 수, 봉해시험

 프로폴리스 제품 - 검사항목 : 총 플라보노이드, 디에틸렌글리콜

2. 검사방법

가. 농산물: 수출사별·포장장소별 1회, 수산물: 수출사별 1회, 축산물: 작업장별 1회 실시

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별 1회 실시

 *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 제품 제외

다. 해당 검사지시에 따른 횟수 충족여부는 진행 중인 건도 포함

라. 검사기간 : '22. 8. 17. ~ 8. 26. (접수일 기준)

2022.08.12.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을 해제 및 재지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대상

1) 해제대상 : 제2021-8호 쿨란트로 [태국,베트남] 농약(사이퍼메트린 등 8종)

검사명령 해제 ('22.8.30. 접수분부터)

해제대상 : 제2021-10호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미국(제조업소1개소)]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헥산 등 5종)

검사명령 해제 ('22.9.01. 접수분부터)

2) 재지정 대상 : 드림스틱(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인도,스리랑카] 금속성이물 2022.8.30. ~ 2023.8.29.까지

나. 검사방법

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시험·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의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명령으로 검사한 항목은 생략(단, 무작위표본검사 시에는 포함하여 검사 실시)

2022.08.17.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효모음료)**

가. 검사대상 : ASIA PACIFIC BREWERIES (SINGAPORE) PTE LTD (싱가포르)

나. 검사품목 : 효모음료

다. 검사항목 : 세균수(살균제품),대장균군

라. 검사방법 : 제품명별 1회

2022.08.25.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피스타치오)**

가. 검사대상 : KEENAN FARMS INC (미국)

나. 검사품목 : 피스타치오

다.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라. 검사방법 : 포장장소별 3회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ALEPAT TAYLOR (AU000000765) (호주)

나. 소 재 지 : 818 LAURISTON RD KYNETON

2022.08.29.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용안)**

가. 검사대상 : 용안(단, 건조한 것은 제외)

나. 검사항목 :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2022.08.30.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

- 가. 검사대상 : MAHARASHTRA OIL EXTRACTIONS PRIVATE LIMITED (IN000000108)(인도)
 - 나. 소재지 : PLOT NO.E-140, MIDC, AWADHAN, DHULE 424 006 MAHARASHTRA
-

2022.08.11.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가.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나.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다.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2-55호, 2022.8.10)**

- 가.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 나. 스테비올배당체 등 5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 다.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 라.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 마.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 **식품의 기준 일부 개정고시(제2022-56호, 2022.8.11).**

- 가.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
- 나.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
- 다.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 라.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2-59호, '22.8.12.)**

- 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위치 변경,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

3. 수산물 정보

2022.08.04.

□ 수입수산물 검사 지시(훗카이도산 이매패류)

- 가. 검사대상 : 훗카이도산 이매패류
 - 나. 검사항목 : 마비성패독
 - 다. 검사빈도 : 매월 해외제조업소별 월 1회
-

2022.08.29.

□ 2022년 현지실사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조치사항

- 가. 검사대상 : HANSUNG AR S.A. (AR000001192) (아르헨티나)
- 나. 소재지 : AV. CORDOBA 1233 PISO 4 1055 BUENOS AIRES, ARGENTINA
- 다. 품 목 : 수산물
- 라. 조치사항 : 수입중단 (2022년 8월 29일 선적분부터)
- 마. 비 고 : 현지실사 부적합

4. 관세정보

□ 소고기 할당관세 판매 및 반출 관련 안내

- 가.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소고기 등의 품목은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천기관에게 수시로 판매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실적을 파악하고 있음.
- 나. 금번 소고기 할당관세는 추석에 유통되는 국내물량을 엄두에 두고 시행되는 성격이 강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매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이 있는 9월달까지는 되도록 추천물량의 6-70% 정도가 판매되고, 연말까지는 추천물량의 7-80% 정도가 판매되어야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 할당관세의 시행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여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물가 안정의 효과가 미비하다면 농식품부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kjy@bkcus.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